

예산총칙

2024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68,929,218	20,067,877
일반회계	649,617,847	19,488,535
특별회계	19,311,371	579,341
기타특별회계	19,311,371	579,34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7,609,005	528,270
주택자금융자특별회계	112,118	3,364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	71,716	2,151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42,135	28,264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특별회계	524,397	15,73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2,000	1,560

제 2 조 세입·세출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과 같다.

제 3 조 2024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총예비비는 4,647,154천원으로 그 중 일반예비비는 1,000,000천원이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3,647,154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기본한도액은 43,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계획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